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 (상호 또는 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설립일
	주소 전화번호(FAX, E-mail):	

등록사항	업무 분야 []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[]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[]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[]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[]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[] 재해복구사업의 분석·평가 업무 []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 업무 [] 1) 풍수해 부문 [] 2) 지진 부문 []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
	기술인력 총 ()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() 기사() 산업기사() 학력·경력자 박사() 석사() 학사() 전문학사()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	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(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나.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	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
업무처리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 3.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고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